#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서미화・김남희・황운하

복기왕 · 한병도 · 김선민

김예지 • 주철현 • 박희승

백승아 • 박수현 • 박해철

오세희 · 신영대 · 한창민

유종오 • 민형배 • 박지원

정준호 · 조계원 · 조정식

강선우 · 차규근 · 김원이

윤종군・김 현・김현정

박 정 • 정혜경 • 이광희

정진욱 의원(3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음. 현행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사람을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 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

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14조).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1호 중 "부교수"를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를 "인권의"로, "위원을"을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를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로 한다.

- 4.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명칭
- 2. 회의 일시 및 장소
-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 시 사유)
- 4. 심의 안건
-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ㆍ성명
-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8.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을 국가인권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 영상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
| 략)                      | 과 같음)                 |
| ② 위원은 <u>다음</u> 각 호의 사람 | ② <u>제5</u> 조의2에 따른 위 |
|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
|                         | <u>후보 중에서 다음</u>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 3                     |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                       |
|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        |                       |
| 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         |                       |
|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                       |
| 야 한다.                   |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 1                     |
| 서 <u>부교수</u> 이상의 직이나 이  | <u>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u>  |
| 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 의 부교수                 |
|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4.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
|                         | 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          |

<u>4.</u> (생 략)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설>

|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
|------------------------|
| 4                      |
| <u>인권의</u>             |
|                        |
| 제5조의2                  |
| 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
| 절차에 따라 위원을             |
| <u>.</u>               |
| ⑤·⑥ (현행과 같음)           |
| ⑦                      |
|                        |
|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
| 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
| ⑧ (현행과 같음)             |
|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
| 설치) ① 위원을 추천하기 위       |
| 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        |
| 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      |
| 를 둔다.                  |
| ② 추천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
| 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
| 있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      |
| 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 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       |
|                        |

제14조(의사의 공개) (생 략)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 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 • 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사항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14 <신 설> 일 이내에 회의록을 국가인권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 영상과 함께 공개하여야 하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 설>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